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18. 11. 29.>

위법건축공사 보고서

허가번호(연도-기관코드-업무구분-허가일련번호)		
건축주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공사시공자	성명	건설업 면허번호 제 호
	전화번호	
	주소	
대지위치		
지번		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허가일자	
착공일자	
위법사항	발생일자 년 월 일
	내용(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)
조치내용	조치일자 년 월 일
	내용(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)

「건축법」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시정, 재시공이나 건축공사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공사감리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